

<p><b>제2019-209호</b> <b>2019년 11월 8일(금)</b></p>	<p><b>시</b>  <b>보</b> <b>여수시</b></p>	<p><b>시 정 지 표</b>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9-33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9-3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7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2708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우두리 53-1번지) 8
- 여수시 공고 제2019-2709호 도로지정 공고(묘도동 384011) 9
- 여수시 공고 제2019-2715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19-2716호 도로지정 공고(상암동 892번지) 11
- 여수시 공고 제2019-2717호 도로지정 공고(상암동 893) 12
- 여수시 공고 제2019-2720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에 따른 공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19-2721호 도로지정 공고(국동 519-9) 14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19-104호 쌍봉 51통 통장 모집 공고 15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454호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안 18
- 여수시 조례 제1455호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 여수시 조례 제1456호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41
- 여수시 조례 제1457호 여수시 차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5
- 여수시 조례 제1458호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 여수시 조례 제1459호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3
- 여수시 조례 제1460호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b>회</b>								
<b>람</b>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11. 8.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 국동 647-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334)사업
  - 나. 명 칭: 국동1통 L마트~국동주유소 뒤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기정 1,662㎡**→ 변경 1,606㎡(감 56)
  - 나. 규 모: L=164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7. 8.31.~2019.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34	8	국지 도로	428	소2-577 봉산동 755-145도	소2-540 봉산동 803-1답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변경	소로	2	334	8	국지 도로	428	소2-577 봉산동 815-6도	소2-540 국동 647-8도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 로 2-334	소 로 2-334	- 도시계획도로 면적 변경 · 기정 3,828㎡ → 변경 3,772㎡(감 56) - 기·중점 변경	- 종단계획고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중점 표기 오류 정정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국동	647-1	도	1,480	16	여수시	여수시			
	국동	647-1	도	1,480	16	여수시	여수시			
2	국동	755-145	도	2	2	임**	765-**			
	국동	755-145	도	2	2	여수시	여수시			
3	국동	647-8	도	58	58	황** 송**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6** 서울 강남구 청담동 1**-** **아파트 7동 4**호			
	국동	647-8	도	58	58	여수시	여수시			
4	국동	755-150	전	101	101	학교법인 호석학원	봉강동 20*-*			
	국동	755-150	도	101	101	여수시	여수시			
5	국동	647-7	대	41	41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6길 2*-(국동)			
	국동	647-7	도	41	41	여수시	여수시			
6	국동	645-12	대	150	150	박**	6**-5	구봉 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68(국동)	근저당권
	국동	645-12	도	150	150	여수시	여수시			
7	국동	645-13	대	47	47	김**	6**-6			
	국동	645-13	도	47	8	여수시	여수시			
8	국동	645-11	전	1	1	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5-**, 10*동10*호			
	국동	645-11	도	1	1	여수시	여수시			
9	국동	645-14	전	2	2	박**	6**-1			
	국동	645-14	도	2	2	여수시	여수시			
10	국동	756-6	전	392	392	정**	경상북도 포항시 대잠동 6**-** **주택 2*호			
	국동	756-6	도	392	392	여수시	여수시			
11	국동	756-8	대	23	23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75*-*	여수수산업협 동조합	여수시 봉산동 100-7(서부지점)	근저당권
	국동	756-8	도	23	23	여수시	여수시			
12	국동	756-9	대	25	25	김**	7**-2			
	국동	756-9	도	25	25	여수시	여수시			
13	국동	756-3	도	15	15	안**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7**			
	국동	756-3	도	15	15	여수시	여수시			
14	국동	757-3	전	170	170	최**	7**			
	국동	757-3	도	170	170	여수시	여수시			
15	국동	759-4	도	6	6	정**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산길 **(국동)			
	국동	759-4	도	6	6	여수시	여수시			
16	국동	774-15	전	262	262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1길 11**-*(국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동일로 120(충정로1가)(여 수시지부)	근저당권
	국동	774-15	도	262	262	여수시	여수시			
17	국동	772-18	전	10	10	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1**			
	국동	772-18	도	10	10	여수시	여수시			
18	국동	772-19	전	126	126	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 22*동 50*호(성사동, **안휴레스트)			
	국동	772-19	도	126	126	여수시	여수시			
19	국동	19-70	도	2	2	국	기획재정부			
	국동	19-70	도	2	2	국	기획재정부			
20	국동	772-16	잡	1	1	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 22*동 50*호(성사동, **안휴레스트)	농협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여수시지부)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국동	772-16	도	1	1	여수시	**안휴레스트) 여수시			
21	국동	772-17	잡	1	1	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7**(국동)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여수시지부)	근저당권
	국동	772-17	도	1	1	여수시	여수시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22	국동	803-3	구	33	33	국	국토교통부			
	국동	803-3	구	33	33	국	국토교통부			
23	봉산동	242-33	구	15	15	국	국토교통부			
	봉산동	242-33	구	15	15	국	국토교통부			
24	봉산동	876-28	대	48	48	연**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2길 ***(봉산동)			
	봉산동	876-28	도	48	33	여수시	여수시			
25	봉산동	876-29	대	3	3	서**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 1*동 2*호(선원동, **석유화학사택)			
	봉산동	876-29	도	3	1	여수시	여수시			
26	봉산동	865-6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봉산동	865-6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27	봉산동	874-16	대	15	8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874-16	도	15	8	여수시	여수시			
28	봉산동	874-33	대	66	53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874-33	도	66	53	여수시	여수시			
29	봉산동	874-32	대	78	17	여수시	여수시			
	봉산동	874-32	도	78	17	여수시	여수시			

○ 지장물조사(변경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승인 번호	승 인 수리일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신고내역	점용·사용 장 소	면적 (㎡)
		주 소	성 명					
2019 -43	2019. 11. 8.	여수시 대경도4길 41-1(경호동)	외동 어촌계	2019. 11. 8.	2019. 12. 7.	부유형 수상 낙시터 설치	여수시 경호동 598번지 지선 공유수면	1,608.12 (직접)

2019. 11. 8.

여 수 시 장

##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3-1번지 외 1필지(53-4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돌산읍 우두리 53-1	29.5	4	12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8.

여 수 시 장

##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묘도동 384-1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96.1	5.7	245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묘도동366	7.9	1.8	10		
384-11	65.6	1.1	191		
384-12	2.6	1.1	2		
384-13	20	1.7	42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8.

여 수 시 장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433	마을어업	-	81.00	화양 옥적	2019.12.14. 2029.12.13.	-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마상어촌계	10157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19. 11. 08.

# 여 수 시 장

## 도로 지정 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892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sup>2</sup>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20.71m	1.4m	29m <sup>2</sup>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상암동	892	20.71m	1.4m	29m <sup>2</sup>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8.

여 수 시 장

## 도로 지정 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893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sup>2</sup>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29.28m	1.4m	41m <sup>2</sup>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상암동	893	29.28m	1.4m	41m <sup>2</sup>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8.

여 수 시 장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 할 수 없음을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8.

### 여 수 시 장

1. 공고사항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고
2. 기 간 : 2019. 11. 8. ~ 11. 23.
3. 장 소 : 여수시 게시판 및 여수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정리내역	비고
둔덕동	산165-3	임야	595	김 *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 ·등록사항정정 완료 시까지 지적측량 정지	임야도면 미존재

#### 5.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지적관리팀(☎061-659-5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지정 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19-9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sup>2</sup>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10m	2m	23m <sup>2</sup>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여수시 국동	519-9	10m	2m	23m <sup>2</sup>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8.

여 수 시 장

##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통장 임기만료에 따라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서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51통장(관할구역 : 주은금호 2차 201동,202동)
2. 공고기간 : '19. 11. 08. ~ '19. 11. 27. 【19일간】
3. 접수기간 : '19. 11. 08. ~ '19. 11. 27. 【19일간】
4.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
5. 접수요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서 구비 신청자에 한함
6.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주민
7. 신청 제외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선출방법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이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임명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 선임
9. 제출서류
  - 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1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8.

쌍 봉 동 장

##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쌍봉동 (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글 (한자 )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현재( 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영웅



여수시 조례 제1454호

붙임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1부.

##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희망바우처”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각종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희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국적법」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북한이탈주민 중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중 만 5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발급대상자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금액)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는 연 8만 원 상당의 희망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희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희망바우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2.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여수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이력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4.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5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6조(희망바우처 발급) 시장은 희망바우처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에게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용 중지)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이하 “사용자”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희망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망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

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사용 기한) 희망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문화 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관리)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용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희망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희망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희망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제5조·제6조·제10조에 따른 희망바우처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희망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체험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전에 제3조제2항의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험처 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	----

발급대상자 (대상 자녀)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구분	[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	------	--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	성 명	관 계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구분	[ ] 발급대상자 [ ] 법정대리인 [ ] 시설대표자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발급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설대표자 (시설 직인)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 신청대상자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담당자(인)

비 고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란	①주민등록초본 확인 [ ] ②카드 등록 [ ] ③카드 지급번호 [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년 이상 여수 거주 입증할 수 있는 주소이력 포함) * 발급대상자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자녀(만 5세~만 18세)인 경우는 제외
	4. 법정대리인 또는 소속 복지시설 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희망바우처 카드(희망바우처 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까지
4.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희망바우처 카드관리시스템 운영 수탁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3.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탁기간
5.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발급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정보, 외국인등록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발급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희망바우처 카드의 발급은 본인,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청소년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희망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희망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나. “북한이탈주민” 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재)발급 위임장

(발급대상자, 법정대리인, 시설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임자 (대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여수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망바우처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발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법정대리인(또는 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8일

여수시장

김인경



여수시 조례 제1455호

붙임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예울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망마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
2. 장도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83-49, 83-51, 83-57, 83-59, 83-67(웅천동)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울마루”를 “망마 지역 예울마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교육장 : 세미나실”을 “교육시설 : 교육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도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

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
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소 및 부대시설
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 지역 예울마루는 물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실 : 10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철야(22시 이후)
3. 교육실 : 9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다) : 입주 작가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허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는”을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까지”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연장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3. 교육실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관리운영지원)”을 “(관리·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마루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공연장 사용료

가. 대극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구분	상세			금액	비고
공연 대관	순수예술	클래식/연극/무용	평일	일580,000원	
			주말/공휴일	일740,000원	평일의 약 120%
	복합장르	오페라/뮤지컬	평일	일760,000원	
			주말/공휴일	일960,000원	평일의 약 120%
	대중행사 (상업적 성격)	콘서트/행사	평일	일1,510,000원	
			주말/공휴일	일1,860,000원	평일의 약 120%
직접비	냉난방비			회당120,000원	1회 4시간 기준
	전기사용료			회당120,000원	1회 3시간 기준
기타	리허설/준비대관		오전 (09~12시)	기본대관료의 45%	종료시간 기준
			오후 (13~17시)	기본대관료의 60%	
			야간 (18~22시)	기본대관료의 80%	
			철야 (22시 이후)	기본대관료의 150%	
	철수 대관			공연종료 후 당일 3시간 무료	3시간 초과 및 익일 철수 시 준비대관료 적용

## 나. 대극장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금액	비고
음향장비	녹음(CD)	1회	50,000원	CD 사용자 부담
	Wireless Mic	1ea	10,000원	핀 마이크/배터리 사용자 부담
	Dynamic Mic	1ea	5,000원	
	Condencer Mic	1ea	10,000원	
	Main Speaker	1일	100,000원	(L/C/R/Sub)
	Digital Mixer	1일	50,000원	
	Monitor Speaker	1ea	10,000원	
	Wireless Intercom	1ea	5,000원	총 4대 사용 가능
조명장비	Follow Spot XENON 2Kw	1ea	30,000원	보유 수량 3ea
	Strobe	1ea	10,000원	보유 수량 3ea
	Dry ice machine	1ea	10,000원	보유 수량 2ea dry ice는 사용자 부담
	Haze machine	1ea	10,000원	보유 수량 2ea 용액 사용자 부담
	2Kw Fresnel	1ea	2,000원	보유 수량 64ea
	S-4 Standard &Zoom	1ea	1,000원	보유 수량 stander- 264ea zoom- 96ea
	Par(64)	1ea	1,000원	보유 수량 70ea
	Par(46)	1set(8ea)	2,000원	보유 수량 7set(56ea)
	Beam Light	1ea	3,000원	보유 수량 4ea
	Upper, Lower Horizont Light	1set(4ea)	3,000원	보유 수량 Upper- 12set Lower- 12set
	LED Moving	1ea	20,000원	보유 수량 12ea
무대장치	덧마루	33m <sup>2</sup>	100,000원	
	댄스 플로어	1식 1작품	200,000원	재료비 사용자 부담
	스크린	1식 1작품	30,000원	
	오케스트라 라이저	1식 1작품	100,000원	
영상장비	프로젝터	1ea	50,000원	12,000 ANSI
악기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	1대 1일	100,000원	조율비 별도

## 다. 부대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금액	비고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순수예술/복합장르 공연		1회 5시간	1,200,000원	부대장비 사용료 별도
	대중콘서트/행사		1회 5시간	1,800,000원	
	전시/리셉션		1회 5시간	800,000원	
	준비/철수대관		일	700,000원	-
기타공간	로비	대극장_일반 리셉션 (4F)	1회 3시간	400,000원	기타 잡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별도
		대극장_대관자 리셉션 (4F)	1회 3시간	200,000원	
		소극장/전시장_일반 리셉션 (3F, 7F)	1회 3시간	300,000원	
		소극장/전시장_대관자 리셉션 (3F, 7F)	1회 3시간	200,000원	
		대극장/소극장/전시장_사인회 (3F, 4F, 7F)	1회 3시간	50,000원	
	야외 테라스	대극장 메인 출입구 (4F)	1회 4시간	700,000원	전기/조명/음향 장비 및 기타 잡기, 폐기물 처리비용 등 별도
		대극장 객석 2층 (5F)	1회 4시간	100,000원	
		오피스 (6F)	1회 4시간	350,000원	
		전시장 (7F)	1회 4시간	300,000원	
	리허설룸	리허설룸 1	1회 4시간	200,000원	대관계약 조건 外 사용 시 적용
		리허설룸 2	1회 4시간	150,000원	
	분장실/락커룸/세탁실		1일 1실	50,000원	
	VIP실	6층 VIP실	1회 4시간	100,000원	1회 3시간 7인실 / TV
		5층 VIP실	1회 4시간	100,000원	1회 3시간 4인실 화장실, 탕비대 완비
스태프 추가 지원	음향/조명 디자인		1작품	1,500,000원	-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인력 지원		1회 8시간	100,000원	-
기타	촬영대관		4시간	3,000,000원	예술마루 전체 공간 적용
	TV녹화 / 중계 (전시/공연관련)		1회	200,000원	녹화시설 사용료 (방송국 부담)
	라디오/인터넷		1회	200,000원	
	환경 정리금		대관자 미반출시	200,000원	대관자 반출 시 50,000원
※ 사용자 부담	음향 녹음 시 CD 등은 사용자 준비				
	조명 포그머신 용액, 드라이아이스, 컬러필터 등은 사용자 준비				
	무대 댄스 플로어 사용시 부착테이프 및 인력은 사용자 준비				
	사용자 준비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사양으로 준비해야 함				
	무선마이크 배터리 : AA 배터리 6개 (1ea당)				
	댄스 플로어 테이프 : haalequin (1통, 약 10L, 100,000원)				
	드라이아이스 : 사양 관계 없음 (1 box 2~3만원)				

라. 소극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 구분	상세		금액	비고	
공연 대관	순수예술	클래식/연극/무용	평일	일310,000원	
			주말/공휴일	일390,000원	평일의 약 120%
	복합장르	오페라/뮤지컬	평일	일390,000원	
			주말/공휴일	일460,000원	평일의 약 120%
	대중행사 (상업적 성격)	콘서트/행사	평일	일570,000원	
			주말/공휴일	일670,000원	평일의 약 120%
직접비	냉난방비		회당100,000원	1회 4시간 기준	
	전기사용료		회당50,000원	1회 3시간 기준	
기타	리허설/준비대관		오전 (09~12시)	기본대관료의 40%	종료시간 기준
			오후 (13~17시)	기본대관료의 60%	
			야간 (18~22시)	기본대관료의 80%	
			철야 (22시 이후)	기본대관료의 150%	
	철수 대관		공연종료 후 당일 3시간 무료	3시간 초과 및 익일 철수 시 준비대관료 적용	

마. 소극장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금액	비고
음향장비	녹음(CD)	1회	50,000원	재료비 사용자 부담
	Wireless Mic	1ea	10,000원	핀 마이크/배터리 사용자 부담
	Dynamic Mic	1ea	5,000원	
	Condencer Mic	1ea	10,000원	
	Main Speaker	1일	50,000원	(L/C/R/Sub/F.F)
	Digital Mixer	1일	30,000원	
	Monitor Speaker	1ea	10,000원	
조명장비	Follow Spot HPZ2511D	1ea	20,000원	보유 수량 1ea
	Strobe	1ea	10,000원	보유 수량 1ea
	1Kw Fresnel	1ea	1,000원	보유 수량 40ea
	S-4 Standard &Zoom	1ea	1,000원	보유 수량 stander- 50ea zoom- 30ea
	Par(64)	1ea	1,000원	보유 수량 30e
	Par(46)	1set(8ea)	2,000원	보유수량 3set(24ea)
무대장치	덧마루	33m <sup>2</sup>	100,000원	
	오케스트라 라이저	1식 1작품	100,000원	
영상장비	프로젝터	1ea	30,000원	5,000 ANSI
악기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C7)	1대 1일	70,000원	조율비 별도

## 바. 장도 야외공연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품목	기준	금액	비고
야외공연장	순수예술/복합장르 공연	1회 5시간	1,200,000원	부대장비사용료 별도
	대중콘서트/행사	1회 5시간	1,800,000원	
	전시/리셉션	1회 5시간	800,000원	
	준비/철수대관	일	700,000원	-
스태프 추가 지원	음향/조명 디자인	1작품	1,500,000원	-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인력 지원	1회 8시간	100,000원	-
기타	촬영대관	4시간	3,000,000원	장도 지역 예술마루 전체 공간 적용
	TV녹화 / 중계 (전시/공연관련)	1회	200,000원	녹화시설 사용료 (방송국 부담)
	라디오/인터넷	1회	200,000원	
	환경 정리금	대관자 미반출 시	200,000원	대관자 반출 시 50,000원
※ 사용자 부담	음향 녹음 시 CD 등은 사용자 준비			
	조명 포그머신 용액, 드라이아이스, 컬러필터 등은 사용자 준비			
	무대 댄스 플로어 사용시 부착테이프 및 인력은 사용자 준비			
	사용자 준비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사양으로 준비해야 함			
	무선마이크 배터리 : AA 배터리 6개 (1ea 당)			
	댄스 플로어 테이프 : haalequin (1통, 약 10L, 100,000원)			
	드라이아이스 : 사양 관계 없음 (1 box 2~3만원)			

## 2. 전시시설 사용료

### 가. 전시실 대관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면적	금액	비고
1 전시실	492m <sup>2</sup>	일 300,000원	10:00~18:00 8시간 기준
2 전시실	180m <sup>2</sup>	일 170,000원	
3 전시실	185m <sup>2</sup>	일 170,000원	
1+2 전시실	672m <sup>2</sup>	일 370,000원	
1+2+3 전시실	857m <sup>2</sup>	일 500,000원	
장도 전시실	409m <sup>2</sup>	일 250,000원	

### 나. 부대장비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상세	보유량	금액	비고
가벽	366X244X45cm	4	50,000원	전시 회당 기준
가벽	244X244X45cm	4	50,000원	
좌대	40X50X90cm	4	5,000원	
	40X50X90cm	5	5,000원	
음향 장비 시스템	Amp, Mic	1조	일 200,000원	
기타집기	단상, 프로젝트	1조	일 50,000원	

※ 위 대관료는 전시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기준이다.

전시실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1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

※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09:00~18:00)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실의 시설안전 및 보안유지 관계로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하게 22:00 이후 심야작업(익일 09:00까지)이 필요한 경우 심야작업 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150%를 할증 적용한다.

※ 전시관련 도록 판매 외에 기념품 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 판매점을 설치할 경우 시설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의 별표와 같이 사용료가 부과된다.

※ 전시기간 중에는 작품의 보호를 위하여 기타 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대관이 불가능하다. 전시 주최 측에서 전시홍보를 위한 방송 또는 CF 제작을 위하여 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교육시설 사용료

구분	수용인원	대관료(원, VAT포함)		보유 기자재 (무료)	비고
		기본 (4시간 기준)	추가요금 (시간당)		
3F 다목적실	60명	100,000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냉·난방기</li>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li>• 음향시설, 마이크</li> </ul>	
6F 교육실 1~4	18명	40,000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실3’ 만 기자재 보유</li> <li>• 2개실(1+2/3+4)로 확장하여 사용가능</li> </ul>
7F 다목적실	60명	100,000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냉·난방기</li>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li>• 음향시설, 마이크</li> </ul>	
장도 교육실	20명	40,000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냉·난방기</li> <li>• 빔프로젝트, 스크린</li> <li>• 음향시설, 마이크</li> </ul>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2조(정의) GS칼텍스 예올마루 (이하 “예올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u></p>
<p><u>제2조(위치) GS칼텍스 예올마루 (이하 “예올마루”라 한다)는 전라남도 여수시 예올마루로 100(시전동)에 둔다.</u></p>	<p><u>제3조(위치) 예올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망마 지역 예올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올마루로 100(시전동)</u></p> <p><u>2. 장도 지역 예올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올마루로 83-47, 83-49, 83-51, 83-57, 83-59, 83-67(웅천동)</u></p>
<p><u>제3조(시설) 예올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생략)</p> <p>4. <u>교육장 : 세미나실 및 기자재</u></p> <p>5. (생략)</p>	<p><u>제4조(시설) ① 망마 지역 예올마루-----.</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교육시설 : 교육실-----</u></p> <p>5. (현행과 같음)</p> <p><u>② 장도 지역 예올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u></p> <p><u>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u></p>
<p>&lt;신 설&gt;</p>	

제4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허가  
사용 가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 10시 ~ 18시로 하  
되, 필요시 야간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  
(13~17시), 야간(18~22시),  
철야(22시 이후)

제6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울마  
루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시실 : 사용예정일로부터

대장비

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
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  
소 및 부대시설
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

제6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  
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 지역 예울마루는 물  
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실 : 10시~18시.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  
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  
3~17시), 야간(18~22시), 철야(2  
2시 이후)
3. 교육실 : 9시~18시.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  
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  
(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  
다) : 입주 작가가 작업하는 경  
우에는 상시 사용허가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  
-----  
-----  
-----  
-----.

1. ----- : -----  
7일 전까지

7일전 까지

2. 공연장 :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 까지. 단,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7조(관리위탁) (생 략)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예울마루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생 략)

2. ----- : -----  
30일 전까지. 다만, -----  
-----  
-----.

3. 교육실 : 사용예정일 3일 전 까지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리위탁)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운영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

제10조(규칙) (현행과 같음)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8일

여 수 시 장

김영환



여수시 조례 제1456호

붙임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류 등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던 유리병·플라스틱·포장용 비닐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농약 등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농약 등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빈 폐농약용기류만 폐농약용기류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조(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폐농약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폐농약 수거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제8조(수거·처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배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수집 장려금 지급) 시장은 수집된 농약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폐농약 수집·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8일

여수시장  인



여수시

여수시 조례 제1457호

붙임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수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신월로 794(봉강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2.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수시의회 의원
4.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9조(협의체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8일

여 수 시 장

김인봉



여수시 조례 제1458호

붙임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에 의하여”를 “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1월”을 “1개월”로 하고, “해임될”을 “해임되었을”으로 하며, “2월”을 “2개월”로 하며, 단서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센터의 장”을 “제9조에 따라 센터장”으로 하고,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아니한 자”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자”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센터의 장의 임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센터장이 임기중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센터 장의 선임 또는”을 “센터장을 선임하거나”로 하며,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7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u>센터의 장</u>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p> <p>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1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u>제8조의 규정</u>에 의해 센터의 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월 이내에 <u>센터의 장</u>을 선임하여야 한다.</p> <p>제9조(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u>센터의 장</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p> <p>1. ~ 2. (생략)</p>	<p>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p> <p>① <u>센터장</u>----- ----- <u>으로</u>-----, ----- ----- -----<u>으로</u>-----.</p> <p>②----- ---1개월----- -----<u>제9조에 따라</u> <u>센터장</u>- 해임되었을----- -----2개월-----<u>센터장</u>----- -----.</p> <p>제9조(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u>센터장</u>----- -----<u>경우</u>-----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자원봉사활동기본법</u> 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p> <p>4. <u>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u></p> <p>5. 파산선고를 받은 <u>자로서</u> 복권되지 <u>아니한</u> 자</p> <p>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u>의하여</u>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u>자</u></p> <p>② <u>센터의 장의 임기중 제1항의</u> 규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u>센터 장의 선임</u> 또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u>제7조 제4호의</u> 규정에 의해 두게 되는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3. 「<u>자원봉사활동 기본법</u>」 -- -----</p> <p>4.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u>이 된 경우</u></p> <p>5. -----<u>사람으로서</u>----- ----- <u>않은 경우</u></p> <p>6. ----- <u>따라</u> ----- -- <u>경우</u></p> <p>② <u>센터장이 임기 중 제1항에 따</u> <u>라</u> ----- ----- ----- -----<u>센터장을 선임하</u> <u>거나</u>----- <u>제7조제4항에 따라</u> ----- ----- -----.</p>
---	---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환경  
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 월 8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1459호

붙임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1부.

##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기금 및 기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19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8일

여 수 시 장

김영봉



여수시 조례 제1460호

붙임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안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과 추진상황
2. 빈집 실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 정비의 시급성, 우선순위, 각종 계획과의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사업 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효과가 큰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한 빈집정비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